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	윤선영 사무관 2110-5457

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, 7.1일부터 본격 시행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지난 4.19일 발표한 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로 '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힘

* (할당관세)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(26일 관보게재)
* (석유수입부과금) 석대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(29일 관보게재)
* (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) 석유제품 품질기준고시(29일 관보게재)

< 4.19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>

◈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%의 할당관세(현 기본관세 3%) 적용,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

◈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(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kl 이상시 적용) 면제

◈ 기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공급자 세액공제율 기존 0.3→ 0.5%로 상향*, 거래보증금 요건 완화 등
* 조특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(기재부, 9월)

○ 이에 석유제품(휘발유·경유)을 수입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(KRX)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,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%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됨

- 또한,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수 있음

○ 종전 15만kl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kl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수입사의 의무도 경감됨

□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(할당관세 22원·수입부과금 16원), 경유는 리터당 40원(할당관세 24원·수입부과금 16원)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됨

* 6월4주 싱가폴 휘발유 96$/B, 경유(0.5%) 106$/B, 환율 1,150원/$ 기준이며, 향후 수입제품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인하효과가 더욱 커지거나 작아질수 있음

※ 4.19일 대책 당시에는 국제제품가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(휘발유 135$/B, 경유 136$/B) 이었음에 따라 가격인하여력이 40~50원/L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음

○ '12년 하반기 경유 수입물량은 '11년 하반기 소비량의 4.5%인 300만 배럴로 예상되며, 이는 '11년 수입량의 3.4배에 해당

- '11년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'11년 하반기 소비량의 2%인 70만배럴이 수입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됨

* 수입사 예상 및 알뜰주유소 공급을 위한 석유공사의 수입 예상물량을 통해 산정

○ 이 경우 '11년 국내 석유시장의 0.65%에 불과하던 수입제품(경유)의 시장점유율이 '12년 하반기에는 5%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다수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시장에 유효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됨

- 또한, 석유공사는 수입 휘발유와 경유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로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알뜰주유소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공급가격도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됨

□ 수입업계와 한국거래소는 7월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6월부터 수입물량을 보세구역에 대기시키고, 전자상거래 매매와 결제 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하고있음

○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시장개설 이후 총 1,071만리터의 거래중 47%에 해당하는 506만리터가 6월중 거래됨(4월대비 약 2배 증가)

○ 한편, 석유관리원은 6월중 수입물량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, 모든 분야에서 국내유통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

□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“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,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* 할것”이라고 언급하고,

* 전자상거래 유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할당관세 추천자격을 제한하거나(할당관세 추천요령), 수입부과금 환급을 유보(석대법 고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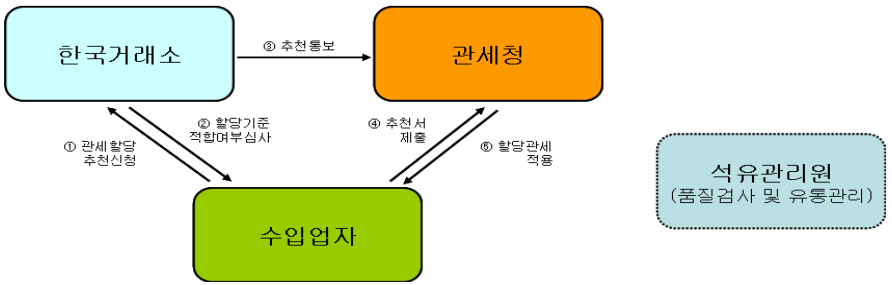
○ “향후 혼합판매가 7월말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게되면 혼합판매 주유소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”이라고 밝힘

참고 : 수입석유제품 세제 혜택 내용 및 세부절차

Ⅰ 할당관세 적용

○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자상거래용 수입 휘발유·경유에 대해 할당관세(0%)를 적용(현 기본관세는 3%)

< 할당관세 적용 절차 >



① 수입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관세할당 추천신청(할당관세적용신청서 및 수입신고서류, 수입 및 공급계획 제출)

② 거래소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, 한계수량 등을 확인

③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관세청에 추천통보 및 수입업자에 통지

④ 수입업자는 추천서를 차기 수입물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

⑤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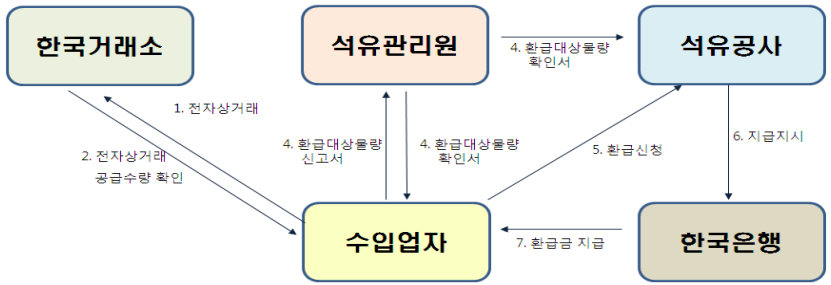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1.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
2. 「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」
3. 「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」

Ⅱ 석유수입부과금 환급

○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(2년간 한시일몰)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(리터당 16원)을 환급

<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절차 >



① 한국거래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

②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발급

③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대상물량 신고(공급수량 확인서, 수입신고필증 등 첨부)

④ 석유관리원은 수입물량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을 비교하여 환급대상물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입업자에 발급 및 석유공사에 통보

⑤ 수입업자는 석유공사에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신청(수입신고필증,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,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첨부)

⑥ 석유공사는 환급액을 확정하여 한국은행에 통보

⑦ 한국은행은 해당 수입물량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」

Ⅲ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

○ 201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수입업자별로 경유 수입량 30만kl까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1. 「지식경제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」

Ⅳ 수입제품의 품질관리

수입협상	선적전	입하완료	국내 품질검사	출하	재고/판매 보고
(완제품이므로 국내 규격보다 까다롭게 요구)	-수출회사 자체검사 (국제공인기관*입회)	(세관) 품명, 수량 등 신고	(석유관리원) 탱크별 품질검사	(세관) 통관후	(석유공사, 세관)
	수출국 ◘ 입하			◘	수시 품질검사 (석유관리원)

* 국제공인검증기관(SGS, SAYBOLT, ITS, NKKK 등)

➡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산출

(국내입하전)

- 수입협상 :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므로 국내규격보다 더욱 까다롭게 신청
- 선적전 검사 : 수출회사(정제회사)가 별도 검사 및 국제 공인검정기관 입회하에 검사한 결과물(시험성적서) 수리

(선적 및 입하)

- 터미널 입하 : 세관에 품명, 수량 등 신고 및 물량 통제 시작
- 국내 품질검사 : 석유관리원 탱크별 품질검사 및 합격 통지를 수리한 이후부터 출하 가능

(출하)

- 통관 : 출하전 세관에 신고 및 제세금 납부 (주행세 사후납부)
- 출하 : 탱크별 출하전표 발행

(보고 및 사후관리)

- 세관 및 석유공사 : 재고 및 판매량 보고
- 석유관리원 : 수시검사 시행